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3. 20(금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공공주택 총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병훈, 사무관 이민규, 주무관 김도현 • ☎ (044) 201-4580, 4536 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신혼부부 범위를 만 '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' 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

<관련 보도내용(연합뉴스, 3.20(금)) >

◆ '.....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'

-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, 매입·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'혼인 7년 이내 부부'에서 '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'로 확대하기로 했다. .

- 주거복지로드맵 2.0을 통해 발표된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이며,
 - 공공분양주택(신혼희망타운 포함)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민규사무관(☎ 044-201-45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